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등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 금지〉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03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제20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및 자격 요건	9
2.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3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한국사 사료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역사학의 공론장을 조성하며 한국사를 대중화하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사편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해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후단 신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신설>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교육부장관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u>결격사유</u>)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9조(위원의 <u>결격사유 등</u>) ①·② (행과 같음) ③ <u>대통령은 위원장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u> ④ <u>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u> 1. <u>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u> 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4.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사보급법”이라 함) 제4조¹⁾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사 보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일반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국민의 역사 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함²⁾³⁾.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⁴⁾.

한편, 한국사보급법 제11조⁵⁾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또한 이러한 규정에 기속된다고 할 것임.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러한 사실이

-
- 1) 한국사보급법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한국사보급법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구체적인 임명 절차 및 자격 요건은 **【참고자료 1】** 제20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및 자격 요건 참조
 - 4) 한국사보급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5) 한국사보급법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해임·해촉할 것을 규정하며,

종래에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에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던 내용⁶⁾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위원의 직위가 가지는 위상과 중요성,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법적인 의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역사 인식에 반하는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자행한 인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유사 입법례로,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언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존재함.⁷⁾

다만, 개정안에서 명시한 “정당화·미화”, “찬양·고무” 등 표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

6)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참고자료 2】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해외입법례 참조

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은 그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판단대상인 친일 옹호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술연구 등을 통해 본인만의 고유한 해석과 이러한 해석을 주장하거나 외부에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어느 특정 사관을 지지했다는 사실과 주장만으로 공무담임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 및 학술진흥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인사혁신처는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임용결격 규정은 모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그 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익 간에 이익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며, 헌법이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불가결한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⁸⁾

8)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②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법률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임용결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다른 결격사유와의 균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무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명권자에게 임면 관련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4

1. 추진 방향 및 절차

- ☐ (방향) 국편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학회 추천 절차 운영
- ☐ (절차) 후보자 인력풀 구성(학회 추천) → 추천위원회 운영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대상자 명단 통보(교육부) → 위촉(교육부장관)
- ☐ 후보자 인력풀 구성 방안
 -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24개 학회에 후보 추천 요청
 - 추천 요건에 맞추어 5명 이내로 추천
 - 시대별·분야별 전공을 고려하여 중복 추천 지양
 - 직장 소재지 기준으로 비수도권 거주자 1명 이상 추천
 - 여성 1명 이상 추천
- ☐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 내·외부의 적임자를 선발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 외부 3명, 내부 2명
 - 학회 추천 인력풀 및 현임 제19대 위원 중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부에 추천할 제20대 위원 후보 25인 내외 선정

2. 위촉 예정자 선정 기준

- ☐ 신규위원
 - 역사에 대한 연구 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시행령 제2조)
 - 전공별·지역별·성별 안배

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수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③항 제2호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②항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대 위원 연임 여부 검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법률 제6조)

3. 추진 일정



참고자료 2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¹⁰⁾

1. 독일 - 「형법」

조문	범죄행위	법정형
국민선동죄 (제130조)	「국제형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나치 범죄(특정 민족, 인종에 대한 학살, 박해, 격리 등)의 공개적인 승인, 부인 등(제3항)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기타 나치 범죄의 공개적인 승인, 찬양, 정당화 등(제4항)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내용을 담은 문서의 배포, 양도 등(제5항)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죄 (제86조제1항제4호)	나치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의 반포, 제조, 보관 등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2. 벨기에 - 「사회주의가 범한 집단학살을 부인, 축소, 정당화 또는 승인을 처벌하기 위한 1995년 3월 23일 법률」

조문	범죄행위	법정형
제1조	독일 국가사회주의가 범한 집단학살을 부인, 축소, 정당화 또는 승인	8일에서 1년의 구금형 및 26~5천 프랑의 벌금

10)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0. 6. 19.

3. 오스트리아 - 「금지법」(Verbotsgesetz)

조문	범죄 행위	법정형(자유형)
제3a조	나치 조직의 유지, 재건 또는 유사조직의 결성 등	10년~20년(최고 종신형)
제3b조	국가사회주의 조직 가입, 후원 등	5년~10년(최고 20년)
제3d조	국가사회주의 조직 설립, 활동 등의 촉구, 사주 등	5년~10년(최고 20년)
제3e조	국가사회주의적 목적의 범죄(살인, 강도 등) 약속	10년~20년(최고 종신형)
제3f조	국가사회주의적 목적의 범죄(살인, 강도 등) 실행	10년~20년(최고 종신형)
제3g조	제3a조~제3f조 이외의 국가사회주의적 활동	1년~10년(최고 20년)
제3h조	나치 범죄(홀로코스트, 기타 범죄)의 부인, 두둔 등	1년~10년(최고 20년)

4. 프랑스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조문	범죄 행위	법정형
제24조의2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에 부속된 국제 군사 재판 규정 제6조에 정의된 반인류적인 범죄의 존재 부인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동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부인행위	1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